

■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

구분	일시	장소
당첨자 발표	2021.03.31.(수) 16:00 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(PC : www.applyhome.co.kr 또는 스마트폰 앱) - 당첨자선정 및 동·호수 결정방법 :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-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, 미계약 발생 시 선착순 공급할 수 있습니다. -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,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계약 체결		

※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.

■ 계약금 납부 방법 및 납부계좌

- 계약금 납부 :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(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,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-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
[오피스텔] 계약금	신한은행	100-035-069305	아시아신탁(주)

- 1차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예시 :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, 입금자명을 '1010203홍길동' 으로 기재)
-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지정된 분양대금의 1차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, 분양대금의 지정된 2차 계약금,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(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말함)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-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■ 구비서류 안내

구분	구비서류
본인 계약 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계약금 입금영수증(반드시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 지참) 2. 청약신청 접수증(영수증) 3. 인감도장 4. 인감증명서 1통(용도 : 오피스텔 계약용, 본인발급용) 5. 주민등록등본 1통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6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내거소신고증(재외동포), 외국인등록증(외국인)) 7. 주민등록초본 1통(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분양신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
법인 계약 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청약신청 접수(영수)증 2.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4. 법인 인감도장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) 5. 법인 인감증명서 1통(용도 : 오피스텔 계약용,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) 6. 법인 등기부등본 1통 7.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및 주민등록등본 1통 <p>※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신분증 지참 ※ 외국법인일 경우 :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</p>
재외동포 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	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(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)
외국인 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	※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)
제3자 대리 계약 시	<p>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(용도 :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) 2.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(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) 3.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및 인장

※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도 일괄 환불되므로, 계약 시 계약금 전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견본법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.

※ 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(2021.03.12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.